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 안 번호 2284

제출연월일: 2024. 7. 26.

제 출 자:정 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부담금의 폐지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영화상영관에 입장하는 관람객에 대하여 징수하는 부과금을 폐지하려는 것임.

법률 제 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25조의2를 삭제한다.

법률 제8280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2857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및 법률 제18659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과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입장한 관람객에 대하여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수납한 부과금의 납부 및 이 법 시행 전에 수납한 부과금을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아니한 경우의 가산금 부과와 강제징수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혂 개 정 안 제2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제24조(기금의 조성)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제25조의2의 규정에 따른 영 <삭 제> 화상영관 입장권에 대한 부과 금 4. • 5. (생략) 4. • 5. (현행과 같음) 제25조의2(부과금의 징수) ①영화 <삭 제> 진흥위원회는 한국영화의 발전 및 영화ㆍ비디오물산업의 진흥 을 위하여 영화상영관(비상설상 영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에 입장하는 관람객에 대하여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화상영관에 입장하는 관람객에 대해서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1. 직전 연도에 제38조제1항제2 호에 해당하는 영화를 연간 상영일수의 100분의 60 이상

상영한 영화상영관

- 2. 직전 연도의 입장권 판매액(2 개 이상의 영화상영관을 경영 하는 경우에는 각 영화상영관 별 입장권 판매액의 합계를 말하며, 직전 연도의 영업 기 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입장권 판매액을 연간 판매액으로 환산한 금액 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보다 적은 영화상 영관
-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입장권의 월 판매액이 감염병 발생으로 직전 3개년간(영업기간이 3개년 미만인 경우에는 영업기간 동안) 같은 달의 평균입장권 판매액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감소한 영화상영관(2개 이상의 영화상영관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각 영화상영관별 입장권판매액의 합계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감염병 발생 연도직전 3개년간 같은 달의 영업

일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달의 입장권 판매액을 월 판매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같은 달의 영업일이 없는 경우에는 감염병발생 직전 연도까지 영업기간동안의 월평균 입장권 판매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영화상영관 경영자는 관람객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부과금을 수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기한까지 해당 부과금을 영화진흥위원회에 납 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수납한 부과금을 납부하는 때에는 부과금수납부 사본등 부과금 수납과 관련된 자료를 영화진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화진흥위원회가 제39조제1항에 따른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을 통하여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수납하여야할 부과금 금액을 확인할수 있는 경우에는 부과금 수납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아

니할 수 있다.

- ④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상영 관 경영자가 제2항에 따라 관람 객으로부터 수납한 부과금을 납 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 을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 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 으로 부과할 수 있다.
- ⑤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상영 관 경영자가 제2항의 부과금 및 제4항의 가산금을 납부기한까 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 를 징수할 수 있다.
- ⑥부과금·가산금의 징수방법, 납부기한 및 부과금 수납 관련 자료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⑦ 영화진흥위원회는 문화체육 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2 항에 따른 영화상영관 경영자의 부과금 수납에 대한 위탁 수수 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제1항에 따른 부과금 징수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 부칙(법률 제12857호 영화 및 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8659호 영 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 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5조의2의 개 정규정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법률 제8280호 영화 및 비디오물 법률 제8280호 영화 및 비디오물 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 부칙(법률 제12857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8659호 영 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 률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 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삭 제>

[별지 제2호서식]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의 결과

○ 부과금 징수 규정 폐지로 인해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징수액이 5개년 간 약 1,509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

(단위: 백만원)

연 도 구 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연평균
부과금 영화관 입장권 부 장수액 과금 예상징수액	29,298	29,738	30,184	30,636	31,096	150,952	30,190
총 비용	29,298	29,738	30,184	30,636	31,096	150,952	30,190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1	제25조의2(부	부과금 징수 제도 폐지에 따른 영화발전기금 수입 감소 예상
1	과금의 징수)	기위요 31 제고 폐계계 씨는 3외를전기요 11 유고 제 3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제25조의2(부과금의 징수)	추계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O '24년 이후 전년대비 영화관 관객수 매년 1.5% 수준 상승 기준으로 수입 예측
- O 영화관 입장권 가격은 24년 기준 유지됨을 가정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24년 예상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수입 총액인 28,865억원에서 매년 1.5% 상승됨^{*}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25~'29년 간 150,952백만원의 징수금 감소가 예상됨
 - * 코로나 이전 시기인 '17~'19년 연평균 관객수 증가율 1.5%로 계산
- 5개년 이후인 '30년 이후로도 매년 약 1.5% 증가한 금액의 징수금이 감소되는 양상이 예측됨

Ⅳ. 부대의견

O 해당 없음			

V. 작성자

○ 성명

주무관	사무관(서기관)	과장	실장•국장
이경봉	이초롱	김지희	윤양수

O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초롱 사무관	044-203-2432	leecr@korea.kr

[별지 제3호서식]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원조달방안

I. 항목별 재원조달방안

○ 정부 내부거래를 통해 재원조달

〈항목별 재원조달방안〉

(단위: 백만원)

연 도 구 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 회계·기금 간 전입	29,298	29,738	30,184	30,636	31,096	150,952
〈합 계〉	29,298	29,738	30,184	30,636	31,096	150,952

Ⅱ. 부문별 재원조달방안

○ 재정당국과 협의를 통해 일반회계 전입 등으로 재원조달

〈부문별 재원조달방안〉

(단위: 백만원)

연 도 구 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 중앙정부	29,298	29,738	30,184	30,636	31,096	150,952
ㅇ 일반회계	29,298	29,738	30,184	30,636	31,096	150,952
<합계>	29,298	29,738	30,184	30,636	31,096	150,952

Ⅲ.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1. 중앙정부의 항목별 재원조달 방안
- 부담금 폐지에 따른 수입감소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 ※ 항목별 규모는 유동적이며, 정부안 확정시기에 맞춰 변동될 수 있음
- 2. 지방자치단체의 항목별 재원조달 방안 : 해당 없음
- 3. 기타 재원조달 방안

O 해당없음

IV. 부대의견

O 해당없음

V. 협의사항

협의시점	혐의기관	주요 협의내용 및 협의결과
		영화발전기금 주요재원을 정부내부거래로
2024년 중	기획재정부	재원조달하되, 전입금 규모는 차년도 예산 정부안
		편성시기에 맞춰 규모 확정

Ⅵ. 작성자

O 성명

주무관	사무관(서기관)	과장	실장·국장
이경봉	이초롱	김지희	윤양수

O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초롱	044-203-2432	leecr@korea.kr